

활기찬 경남 **행복한 도민**



경상남도

[www.gyeongnam.go.kr](http://www.gyeongnam.go.kr)

공보

제2584호 2022. 11. 29.(화)

# 경 남 공 보

제2584호

2022. 11. 29.(화)

## 조례

제5286호	경상남도 사회대통합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2
제5287호	경상남도 친환경어업 육성 및 지원 조례	.....	5

## 규칙

제3324호	경상남도 건축 기본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	7
--------	---------------------------	-------	---

# 경 남 공 보

제2584호

2022. 11. 29.(화)

## 조례

경상남도의회에서 의결된 경상남도 사회대통합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경상남도지사

박완수



2022년 11월 29일

### ● 경상남도 조례 제5286호

#### 경상남도 사회대통합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사회에 내재된 갈등을 치유하고 도민통합을 위한 정책 및 사업 등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경상남도 사회대통합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도민통합을 위한 정책 등을 자문하기 위해 경상남도 사회대통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도지사의 자문에 응한다.

1. 도민통합을 위한 기본 방향 설정에 관한 사항
2. 도민통합을 위한 전략의 수립·변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3. 지역사회에 내재된 갈등의 원인분석과 해소방안 및 예방에 관한 사항
4. 도민적 통합가치의 도출 및 확산에 관한 사항
5. 도민통합 공감대 형성 및 문화 확산에 관한 사항
6. 도민통합에 관한 의견 수렴 및 소통 활성화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도민통합에 관한 사항으로서 도지사가 위원회에 자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5명 이내의 부위원장과 10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도민통합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도지사가 지명하고, 위원회의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임한다.

# 경 남 공 보

제2584호

2022. 11. 29.(화)

④ 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위원회에 2명 이내의 간사를 두며, 간사는 위원 및 위원회 업무 소관 실·국·본부장 중에서 도지사가 지명한다.

제5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은 제1항에 따른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후임위원이 위촉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제6조(위원의 해촉) 도지사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건강상의 이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지명한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나머지 부위원장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③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1. 도지사가 개최를 요구하는 경우
  2.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이 개최를 요구하는 경우
  3. 그 밖에 위원장이 위원회를 개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⑤ 위원회는 안건 심의를 위해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단체의 장 또는 관계 공무원과 민간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9조(분과위원회 및 자문단)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에는 분과위원장 및 분과위원회 간사 각 1명을 두되, 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분과위원회 간사는 분과위원장이 지명한다.

③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에 관한 폭넓은 의견 수렴이나 전문적 검토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사회적 신망 또는 덕망이 높거나 관계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자문단을 둘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분과위원회, 자문단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경 남 공 보

제2584호

2022. 11. 29.(화)

제10조(비밀누설금지) 위원회 위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제11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법인·기관·단체 또는 전문가 등에게 자료의 제출, 의견의 진술, 그 밖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추진 상황 등의 보고) 위원회는 도민통합과 관련된 업무의 주요 추진 상황 및 업무 성과 등을 도지사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13조(수당 등) 위원회, 분과위원회 및 자문단의 회의에 참석하거나 출장한 위원, 자문단의 구성원,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제14조(운영 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경 남 공 보

제2584호

2022. 11. 29.(화)

경상남도의회에서 의결된 경상남도 친환경어업 육성 및 지원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경 상 남 도 지 사

박 완 수

인

2022년 11월 29일

## ● 경상남도 조례 제5287호

### 경상남도 친환경어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어업의 환경보전기능을 증대시키고 경상남도의 지역적 특성에 적합한 친환경 어업의 육성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친환경어업”이란 항생제·항균제 등 화학자재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사용을 최소화하여 건강한 생태계와 환경을 유지·보전하면서 안전한 수산물을 생산하는 산업을 말한다.
2. “친환경수산물”이란 친환경어업을 통하여 얻는 것으로 다음 각 목의 수산물을 말한다.
  - 가. 유기수산물
  - 나. 무항생제수산물
  - 다. 활성처리제 비사용 수산물

제3조(도지사의 책무)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친환경어업의 안정적인 성장·발전과 경쟁력 강화 방안을 마련하고 관련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친환경어업 실천계획의 수립 협조) 도지사는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에 따른 친환경 어업 실천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 한 경우에는 시·군 및 공공기관, 법인·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생산 및 유통지원) ① 도지사는 친환경수산물과 유기어업자재(법 제2조제6호의 자재 중 어업에 관련된 자재를 말한다)의 생산자·생산자단체·유통업자에 대하여 필요한 시설의 설치자금 및 친환경수산물 인증비용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은 친환경어업에 대한 기여도 및 법 제32조의2제1항에 따른 평가 등급에 따라 차등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친환경어업 소득 보전 등) 도지사는 친환경어업의 실천으로 소득이 현저히 감소한 어업인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소득 감소분의 상당 부분을 지원할 수 있다.

# 경 남 공 보

제2584호

2022. 11. 29.(화)

제7조(친환경어업 기술 개발·보급 및 지도 등) ① 도지사는 친환경어업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관련 기술의 연구개발·보급 및 어업인 지도에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친환경어업 관련 기술의 연구개발·보급 및 어업인 지도를 수행하는 기관 및 법인·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판매·소비·수출 촉진) ① 도지사는 친환경수산물의 판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시장 개척, 생산자 소비자 간 직거래 확대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친환경수산물의 소비를 촉진하기 위하여 공공기관 등에 친환경수산물의 우선구매를 권고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친환경수산물의 수출을 촉진하기 위해 해외시장 조사 및 정보의 제공 등 필요한 지원 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친환경수산물의 판매·소비·수출 촉진에 관한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전문가협의체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제9조(친환경어업 육성시책의 연계) ① 도지사는 어업인의 소득을 지속적으로 증대하기 위하여 친환경어업 육성시책을 어촌체험과 연계하여 추진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정서 함양과 건강 증진을 위하여 유치원·어린이집 원아 및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이 친환경어업을 체험할 수 있는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0조(학교급식) 도지사는 친환경수산물이 학교 급식용 식재료로 공급되어 성장기 학생들의 건강 증진과 식생활 개선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경 남 공 보

제2584호

2022. 11. 29.(화)

## 규 칙

경상남도의회에서 의결된 경상남도 건축 기본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 한다.

경 상 남 도 지 사

박 완 수



2022년 11월 29일

### ● 경상남도 규칙 제3324호

#### 경상남도 건축 기본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경상남도 건축 기본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특수한 건축분야의 공공건축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건축정책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추가 위촉할 수 있다.

제5조제1항 중 “별지 제2호서식”을 “건축기획 단계에서 별지 제2호서식”으로 한다.

제6조를 삭제한다.

별표 1, 별표 2 및 별지 제2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경 남 공 보

제2584호

2022. 11. 29.(화)

[별표 1]

## 공공건축가 업무 흐름도(제5조 관련)



# 경 남 공 보

제2584호

2022. 11. 29.(화)

[별표 2]

## 공공건축가 세부 평가기준(제9조 관련)

평가항목	평가지표	배점	비고
	총 점		100점
참여실적 (20점)	<p>[자문 및 사전검토 참여건수]</p> <p>① 5건 이상 20점      ② 4건 이상 15점 ③ 3건 이상 10점      ④ 2건 이상 5점 ⑤ 실적없음 0점</p>	20점	
이용자 만족도 (60점)	<p>[발주부서 만족도]</p> <p>① 매우 만족 20점      ② 만족 15점 ③ 보통 10점      ④ 불만족 5점 ⑤ 매우 불만족 0점</p> <p>[지역주민 등 이용자 호응]</p> <p>① 매우 만족 40점      ② 만족 30점 ③ 보통 20점      ④ 불만족 10점 ⑤ 매우 불만족 0점</p>	20점 40점	
제도활성화 기여도 (20점)	<p>[소모임 등 회의 참여 건수]</p> <p>① 4회 이상 10점      ② 3회 이상 7점 ③ 2회 이상 5점      ④ 1회 이상 3점 ⑤ 실적없음 0점</p> <p>[제도 활성화 의견 제출]</p> <p>① 3건 이상 10점      ② 2건 이상 7점 ③ 1건 이상 5점      ④ 실적없음 0점</p>	10점 10점	

# 경 남 공 보

제2584호

2022. 11. 29.(화)

[별지 제2호서식]

## 공공건축가 추천 요청서(제5조 관련)

사업명			
부서명		관련부서명	
담당		담당자	

진행사항			
신청사항	공공건축가 ( ) 명	중점 요청 내용	기타

사 업 개 요	
· 위치 :	
· 규모 :	
· 기간 :	
· 총사업비 :	
· 주요내용 :	
· 사업특성 :	
· 사업대상지 현황 :	

※ 각 항목은 사업특성에 따라 조정 가능하며, 위치도 및 기타 세부사항은 별임자료 첨부

위와 같이 경상남도 공공건축가 추천을 요청합니다.

년      월      일

경상남도지사 귀하